

U	목 표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세부목표	14.b 소규모 영세어업자들에 해양자원 및 시장 접근성 제공
N	지 표	14.b.1 소규모 영세어민을 위해 해양자원에 대한 접근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 규제, 정책, 제도 프레임워크의 국가별 적용 단계에서의 진척도

I. 글로벌 지표 정의 〈2유형〉

지표명	소규모 영세어민을 위해 해양자원에 대한 접근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규제/정책/제도적인 프레임워크의 국가별 적용 단계에서의 진척도
	소규모 어업에 대한 접근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적/규제/정책/제도적 구조를 채택하고 시행하는 국가들의 진행 상황을 의미하며, 소규모 영세어민의 해양자원 접근성에 대한 국가들의 진전도를 평가함
정의	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CCRF, Cord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설문지에는 소 규모 어업에 관한 다음 3가지 측면을 반영함. 1) 소규모 수산분야를 구체적으로 대상으로 하거나 다루는 법률, 규정, 정책, 계획 또는 전략 이 있는가?
	2) 소규모 어업(SSF, Small-scale Fisheries) 가이드라인(소규모 어업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이행하기 위해 진행 중인 구체적인 이니셔티브가 있는가? 3) 어업인/직원이 참여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자문/자문기구가 있는가?
	국가지표는 이러한 질문을 바탕으로 특히 소규모 어업에 대한 접근권을 촉진하고 촉진하기 위한 실제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Ⅱ. 데이터 설명

글로벌 지표 링크

## [데이터] 소규모 어업에 대한 접근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 규정, 정책, 제도적 체계를 적용한 정도에 있어서 국가들의 진전도

	핵심적인 세 영역의 하위 변수들이 달성되고 있는지에 따라 미리 정해진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후 이를 바탕으로 각 국가의 점수를 산출하게 됨	
산식	각 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모든 하위 변수를 실천하고 있는 경우 1점을 얻게 됨. 변수 1: 소규모 영세 어업만을 목표로 하는 법(총 0.4점의 가중치를 갖는 5개의 하위변수) 변수 2: 소규모 어업(SSF)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위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이니셔티브(총 0.3점의 가중치를 갖는 10개의 하위변수) 변수 3: 영세 어민과 어업 노동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메커니즘의 존재(총 0.3 점의 가중치를 갖는 1개의 하위변수)	
	각 하위 변수에 할당된 가중치의 총합에 따라 다음과 같이 5단계의 진척도 점수를 매김	
	점수 분류	
	○ ○ ○ ○ ○ ○ ○ ○ ○ ○ ○ ○ ○ ○ ○ ○ ○ ○ ○	
	0.2 ~ <0.4   2등급: 소규모 어민들의 자원과 시장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낮은 정도   0.4 ~ <0.6   3등급: 소규모 어민들의 자원과 시장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보통인 정도	
	0.6 ~ (0.8 4등급: 소규모 어민들의 자원과 시장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높은 정도	
	0.8 ~ <1.0 5등급: 소규모 어민들의 자원과 시장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매우 높은 정도	
측정단위	-	
자료수집방법	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CCRF, Code of Cu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설문지를 통해 각 국가의 국가어업관리부를 중심으로 수집된 자료를 별도의 수정을 거치지 않고 활용	
시계열 및	▮시계열: 2018년 (한국 데이터 수록)	
공표주기	■ 공표: 부정기	
지표소관기구	<b>표소관기구</b> 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데이터: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메타데이터: https://unstats.un.org/sdgs/metadata/files/Metadata-14-0b-01.pdf